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/ 전화 (02) 3707 - 9157~8 / 전송 3707 - 9169  
 처리부서 : 사회과(중구 서소문 별관 1동 4층) 담당 남인현

문서번호 사회 65731-1394

시행일자 1998. 7. 15 '8661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
보건사회국장	전결	
사회과장		법무담당관 '김사관'
의료보험계장		
기안	남인현	협조

제목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

1.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중 「시립영보자애원」 원생들이 시설과 인접한 경기도 용인시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 제10조, 동법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를 설정,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대상지역 : 경기도 용인시

나. 설정사유 : 시립영보자애원과 지역적으로 단거리에 있는 용인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

다. 공고문 : 별첨

첨부 : 1.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 공고문(안) 1부.

2.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 협의공문 각1부. 끝

원본대조필

(제2안)

수신 : 보건복지부장관

참조 : 보험관리과장

제목 :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보고

의료보호법 제10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료보호 복수진료

지구를 별첨 공고문과같이 설정하고 보고합니다.

첨부 :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 공고문 1부. 끝

## 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 통보

의료보호법 제10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를 설정하고 이를 별첨 공고문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 공고문 1부. 끝

## 서울특별시

수신처 : 여성복지과장, 의료보험연합회,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, 경기도지사(보건과장), 동작구청장(사회복지과장)

(제4안)

수신 : 행정자치부장관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개재의뢰

의료보호법 제10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을 공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보 개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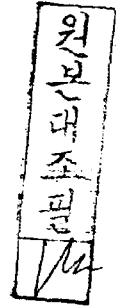
가.관보개재희망일자 : 98.7.25일자

첨부 :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 공고문 2부. 끝

## 서울특별시

~~327~~

330



(제5안)

수신 : 공보담당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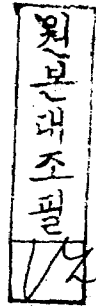
제목 : 시보게재의뢰

의료보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료보호 복수진료  
지구 설정 공고문의 시보 게재를 의뢰합니다.

가. 시보게재희망일자 : 98.7.25

첨부 :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 공고문 2부. 끝

사 회 과 장




# 공 고 (안)

공 고 심 사	1998. 7. 15	제 3P/호
담 당 자	법제심사계장	법무담당관
결	전 결	세 각

서울특별시공고 제 1998 - 386 호

##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설정 공고

의료보호법 제10조,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시립정보자애원 원생들의 진료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아래 지역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로 설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.

1998년  7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### 1. 의료보호 복수진료지구 설정 지역

시 설 명	소 재 지	복수진료지구의 범위	
		당 초	추 가
시립정보자애원	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464	서울시, 수원시	경기도 용인시